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법경찰관의 스톱킹범죄 사건송치 의무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27호)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2026. 7. 29.
3. 회 부 일: 2026.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스토킹범죄를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략)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u>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u> 그 효력을 상실한다.	<u>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u> <u>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u>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불기소처분을 한 때에</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u>
--	---

2. 검토의견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¹⁾
- 개정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1) 법률 제21241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²⁾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의견청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³⁾

○ 스토킹범죄⁴⁾는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위법

2)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③ (생략)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⑧ (생략)

3)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생략)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성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수사 초기에는 개별 행위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범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충실한 수사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⁵⁾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⁶⁾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유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건 송치 의무를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22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3) (생략)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에 관한 사건
송치 의무를 각각 규정하는 개정안⁷⁾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동·청
소년대상성범죄에 관한 사건송치를 규정하는 개정안⁹⁾이 성평등가
족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임에 따라 이와 일치시
키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전건송치
도입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범죄는 스토킹범죄 이
외에도 다양하여 특정 죄명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규정
신설 여부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0

7)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28호)

8)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29호)

9)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31호)